

HOME > 물질규제정보 > 물질규제정보

물질규제 정보

물질규제정보

법규정보 상세정보

물질규제정보

아세트산 암모늄

CAS No.	631-61-8	UN No.	KE No.	KE-01629	EU No.	211-162-9
---------	----------	--------	--------	----------	--------	-----------

국내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금지물질
✓				
제한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기존화학물질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금지물질
✓				
제한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유해성 미확인물질	

* 화평법 제2조10의3 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지정수량
해당없음(비위험물)	

목록